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

1. 발의자 : 김명석, 김영래, 백철현, 이성재, 배명호, 이수경, 이화숙 의원
공동발의

2. 제정이유

❍ 각종 영농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들녘환경 미관 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 군의 주력 상품인 명품 “성주참외”의 브랜드가치를 지속 유지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.

❍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깨끗한 들녘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촌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·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(안 제1조～제2조)
·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를 위한 적용대상 정의(안 제3조)
·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를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(안 제4조)
·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를 위해 실행계획 수립·시행, 실천운동전개, 군민참여, 환경지도자운영, 사회단체 활동 등의 조항 명시(안 제5조～제9조)
· 들녘환경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～제16조)
· 그 밖에 협의체 구축 및 구성, 행·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～제19조)

4. 관련법령

❍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및 제22조

5. 검토보고

❍ 본 조례안은 각종 영농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들녘환경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 군의 주력 농산품인 명품 “성주참외”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 유지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

❍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들녘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촌을 후손대대로 물려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,

❍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감사합니다.